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28
----------	-------

발의연월일 : 2026. 1. 8.

발 의 자 : 이해민 · 신장식 · 조인철
안도걸 · 강경숙 · 손명수
강준현 · 최혁진 · 김재원
백선희 · 이정현 · 이주희
서영석 의원(13인)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전략 자산이자 필수 기반 시설임.

현재 세계 각국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기가와트급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력, 부지, 세제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우리 정부 역시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현행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체계에서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가 극히 제한적

이거나 소규모로만 허용되고 있어, 기가와트급의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발전소 인근에 입지하고도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심각한 제도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진흥과 기반 조성을 위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특히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대용량 발전원과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과감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센터 정의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통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하려는 자의 원활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여 관련 복합 인허가등 사항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접수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속한 개시 요청, 관계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 및 검토 결과의 기간 내 통지 의무, 타임아웃제(인허가등 간주) 등 일괄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시책을 수립하고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구축장소, 운영목적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전문인력의 양성, 부대시설의 설치, 자금 융통·투자 등 각종 금융 지원과 더불어 보조금 지급,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인식 제고, 협회 설립 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11조부

터 제18조까지).

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감면 등의 조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제외, 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 허용 및 「건축법」상 승강기,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의 설치의무 적용 예외, 그 밖에 입지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

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확충 및 이용 활성화 등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2.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통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복합 인허가등의 일괄처리 및 신고

제9조(복합 인허가등의 일괄처리) 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려는 자(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등록 및 이와 관련된 동의·협의·평가·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절차가 2개 이상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복합 인허가등의 일괄처리(이하 “일괄처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 신고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6.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인허가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괄처리 신청·접수 절차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창구 일원화,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일괄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일괄처리 신청서 및 관련 인허가등에 필요한 서류·자료(이

하 “일괄처리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괄처리 신청서등을 검토한 결과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괄처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제3항의 일괄처리 신청서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괄처리 신청의 검토가 완료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일괄처리 접수 사실 및 일괄처리 신청서등을 통보하고 인허가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6항의 요청을 받은 다음 날부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없거나 90일보다 긴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내에 인허가등에 관한 검토 결과를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가 인허가등의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의견 청취 절차를 포함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제7항의 기간(제8항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관계기관의 장이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에게 인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에게 제7항에 따라 통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처리 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 인허가등의 일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고) 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구축장소, 운영목적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9조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복합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받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신고를 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이나 특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

제11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력 및 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2. 도로의 건설
3.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등 통신시설의 설치
4. 그래픽 처리 장치, 신경망 처리 장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의 사업화를 위한 구입 지원 또는 제공·임대
5.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우수 인력의 채용 확대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교육훈련

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의 수립, 지원,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과 관련한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금융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에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지급) ①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

축·운영하거나 하려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3. 국가 간 공동 연구·개발
4.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국제협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공조
6.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지역사회와의 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 또는 확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 또는 확장하려는 자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 또는 확장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과의 교류 및 상생을 위하여 총 건축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기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바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인접한 지역에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설 등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협회) 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특례 등

제19조(세제에 관한 특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과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설의 구축·운영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본다.

1. 운영 중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연산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확장하는 경우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전력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 특례) ① 이 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별도의 전력공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거래의 조건 및 방식에 대하여는 발전사업자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전기사용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법률적용 특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

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64조제1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3.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

제23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중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로 본다.

②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로 본다.

③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항만법」에 관한 특례) 「항만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 단지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은 같은 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려는 자와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은 인공

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회신한 결과(검토 내용을 포함한다)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특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2,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6,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또는 제16조의7,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 또는 제90조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증을 위한 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개선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
2.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